

제과인들의 권리 찾기 ④

제과점을 창업하고 경영하다보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법과 세무에 관련한 난관 앞에서는 막막해지게 마련.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 보면 그리 멀리 않은 곳에 해법이 있다.


권리 앞에 당당한 제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생활 속의 법률 상식 노트를 펼쳐보자.

글 · 정동현 세무사

치과정보지 '덴포라인' 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지 '전국부동산뉴스' 세무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세무 및 경영자문서비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02)876-2376

부동산 전문 · 공재옥 대신부동산컨설팅 대표 ☎02)884-3344

법률 전문 · 문교석 법무사 ☎02)874-9870



알아두면 요긴한 창업 세무상식 II

창업 및 경영시 세금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관련 사항을 사전 협의해

세금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난 호 '기본 세무상식'에 이어 이달에는 직원 급여 및 4대보험 신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창업 절차를 마치고 나면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이때 직원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통해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며 4대보험 또한 가입 · 납부한다.

1. 급여신고

(1) 신고방법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 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원천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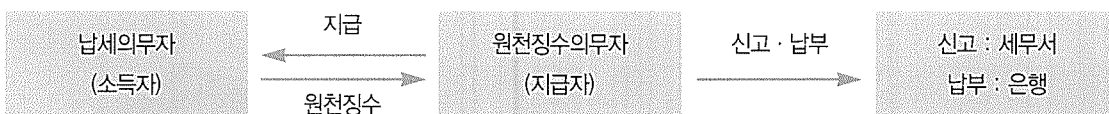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 정산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급여총액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해 보아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돌려주거나 혹은 더 부과하는 절차이다.

(2)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에서 세금을 미리 떼 대신 내주는 제도이다.



- 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가능)
-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

2. 4대 사회보험

(1) 건강 보험

1) 가입 대상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사용자와 피부양자이며, 중점가입 대상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중점가입 대상 확대

- 2003. 7월 : 법인 및 근로자 4인이상 사업장
- 2004. 7월 : 근로자 2인이상 사업장
- 2005. 7월 : 모든 사업장

2) 보험료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월 보수'가 해당되는 「표준보수월액」에 기준해 보험료를 부과한 후,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한다.

보험료 산정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표준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보수월액이며, 계산이 용이하도록 연평균 보수월액을 일정범위로 등급 구분해 책정해둔 보험금액을 표준보수월액이라 함.

※**보험료율** : 2002년 3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3.63%=사용자 1.815%+가입자 1.815%

(2) 국민연금

1) 가입대상자

① 직장가입자(의무가입)

지금까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올해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된다. 단, 올해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우선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고, 2004년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지역가입자(의무가입자)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3개월 미만 기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 자영업자.
 -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로서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낸 사실이 있는 자.
 - 27세 이상의 무소득자.
 - 배우자와 사별한 자.
- ※ 무소득자의 경우 가입은 하되 납부예외자로 처리.

2)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의 9%, 지역가입자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의 7%(2003년 7월 1일 이후)이다. 단,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4.5%, 근로자가 4.5%씩 부담한다.

3) 보험료 징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납부 가능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편의를 위해 분기납, 선납 및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 고용보험

1)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고용보험제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용근로자는 물론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도 적용되는데, 단,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65세 이상자 또는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세가지로 구분 부과된다.

- **실업급여** - 임금총액의 0.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 임금 총액의 0.15%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임금 총액의 0.1%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45%, 사업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0.7%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3) 보험료 납부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70일 이내에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그해의 예상 보험료를 보고·납부해야 한다.

(4) 산재보험

1) 가입대상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2) 보험 가입 및 납부

산재보험 가입자는 사업주이다. 창업 이후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모든 의료사업장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됐다. 즉, 직원급여신고시 반드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하며 급여에 대한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월급여의 15%정도가 4대보험료로 징수되는데 이중 근로자부담이 6.765%이고 사업주 부담이 8.235%정도 된다.

3.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조달

(1) 지원대상 및 요건

-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고 있는 자
도·소매,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2) 지원 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5.9%(변동 2003년 기준)
- 상환기간 : 5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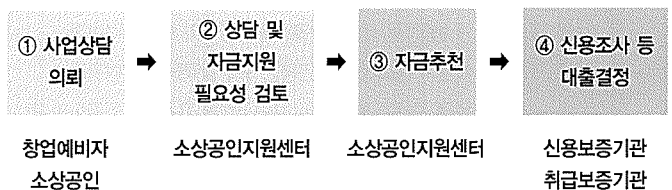
(3) 자금신청 절차

- 신청기관 : 전국 7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센터에 양식 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4) 추천절차

- 추천 처리기간 : 자금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추천심사 :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

◇ 자금 추천절차



(5) 대출 취급 금융기관

- 국민·기업·한미·하나·서울·외환·우리·조흥·신한, 지방은행(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 농협
- 센터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취급금융기관(지점)에 추천서 발송

(6) 자금지원 사후관리

- 지원실적 보고, 지원실적 지도·감독, 자금의 용도의 사용방지 및 지속적 경영지도
-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자금 유용, 불법사용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자금의 조기회수